

생활체육지도자의 고용환경 및 처우 개선 건의안

의안 번호	2170
----------	------

발의년월일 : 2017년 10월 24일

발 의 자 : 이성희, 김제리, 김경자(강서),
최영수, 황규복, 우창윤,
김구현, 김인제, 김혜련,
이병해, 김창원, 이복근,
우미경, 박중화, 문상모,
남창진, 김기만 의원(17명)

1. 주 문

- 생활체육지도자들은 국민들의 체육에 대한 관심과 시대적 요구에 따라 양성되어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근무조건과 기대와 수단의 불일치로 인하여 직무의 불안정과 높은 이직율을 보이고 있음

이에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채용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이 대한체육회의 규정으로 명시되어 실효성이 크지 않으므로 법으로 격상하여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기관에 건의함

2. 제안이유

-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1986년 19.4%에 불과하던 ‘국민생활체육활동참여율’이 2013년 40%로 증가하고, 2017년에는 6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체육활동 참여의 주된 이유로 건강유지 및 증진(52.2%), 체중조절 및 체형관리(19.0%)를 드는 것만 보아도 국민의 건강에 대한 열망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유도하고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2000년부터 일반 생활체육지도자를 채용배치하기 시작하였고, 동호인 육성과 생활체육 저변확대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음
- 그러나 신규 지도자와 10년이상 근무한 장기근속 지도자의 보수 격차가 전혀 없고, 근속연수가 길어져도 임금 인상율에 변동이 없어, 지속적으로 불안정한 고용상태와 과도한 근무시간 등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이직율이 높아지고 있음
- 생활체육지도자는 신체적 훈련과 제반지식을 쌓기 위해 장시간 교육을 받은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고용 및 근무여건에 관하여 소관기관의 규정으로 명시될 뿐 법령의 명확한 규정이 미비하고 낮은 사회적 지위와 개인의 능력이 고려되지 않아 이직의도를 높이고 직업에 대한 애착심을 약화시키는 실정임
- 이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정의는 「생활체육진흥법」, 자격 사항은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및 근무 규정」은 대한체육회에 분산 규정된 바, 하나의 법률에 구체적으로 통합·규정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어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건의하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활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나. 기 타 :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 규정」

4. 이 송 처

가. 국 회 : 의장,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나. 정 부 : 청와대, 국무총리실,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다. 기 관 :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생활체육지도자의 고용환경 및 처우 개선 건의문

생활체육지도자는 풀뿌리 체육 활성화의 중추입니다.

생활수준 향상과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라 국민들은 여가를 즐기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 있으며, 생활체육에 대한 인식 변화로 건강을 위해 체육활동을 영위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986년 19.4%에 불과했던 국민생활체육활동참여율이 2013년 40%로 증가하였고, 2017년에는 60%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건강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고, 사회·국가를 위해서도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생활체육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지면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역할도 커졌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등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들로서, 생활체육의 보급과 운영,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 지도 등 우리나라 풀뿌리 체육 활성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시작된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대국민 체육서비스의 수준을 제고할 목적으로 시작되어, 현재 대한체육회 산하 전국 17개 시·도 229개 시·군·구 체육회에 2,600명이 배치되어 있고, 서울시에는 서울시체육회 및 각 자치구에 총 32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체육전문가, 그러나 전문가다운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 체육전문가들이 수행하는 역할과 그 업무의 중요성에 비해 처우는 매우 열악합니다.

일선 생활체육 현장에서의 지도활동이 주된 임무로 하는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 원칙이지만, 행정업무와 각종 행사로 인해 업무시간 외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주말의 경우 관내에서 이루어

지는 대회 지원이나 행사 준비 등 격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로 인한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2년 단위의 계약직으로 채용·배치되는 기간제 근로자 신분입니다. 이들을 괴롭히는 고용불안과 소속감 부재는 높은 이직률을 초래하여 2016년 서울시의 경우만 보아도 30%가 넘고(경기도는 40%), 이것은 생활체육의 성장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한국노총이 발표한 4인가구 표준 생계비 575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월평균급여 170만원 내외(실수령액 기준)의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으며,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등 기본적인 복지도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2000년에 선발되어 17년 동안 젊음을 바쳐 국민건강과 건강한 사회를 위해 일해 온 생활체육지도자 제1기가 벌써 마흔 살이 넘어 2자녀 내지 3자녀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7년을 근무한 이들이나 1년을 일한 사람이나 동일한 급여를 받는다니 그 불합리함에 말문이 막힐 지경입니다.

「기간제법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에 의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상에서 생활체육지도자가 제외되어 있고,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에서도 빠져 있어 이들의 사기 저하는 차마 말로 옮길 수 없는 형편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조치, 더 미룰 수 없습니다.

어느 분야에서든 적정한 처우는 근로자의 자긍심과 물질적 만족을 높여 직업 안정성과 근무의욕을 높일 수 있으나, 처우가 적정수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불만과 사기 저하를 가져오게 되고 이는 업무 수행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게 됩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이 실시된 2000년 이후 17년이 지난 지금, 국민 건강에 기여하는 생활체육전문가로서의 자부심과 열정으로 버텨왔으나, 이제 더 이상은 역부족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어려움을 이대로 방치하면

생활체육의 근간이 흔들리게 됩니다.

첫째,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점진적 정규직화가 필요합니다.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한편, 시·도 체육회를 통한 인력의 통합관리가 필요합니다.

둘째, 처우개선을 위한 보수 및 제수당의 현실화가 시급합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에 훨씬 못 미치는 급여와 수당을 현실에 맞는 수준으로 지급하고, 그 외에도 장기근속자에 대하여 근속연수에 비례한 정당한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 각종 수당 및 복지혜택 공식화, 충분한 사무 공간 및 휴게 공간의 제공은 물론, 복무규정 확립으로 휴가 사용을 보장하고, 과도한 초과근무나 지자체 행사 동원은 지양토록 하며, 자기계발이 가능하게 하는 등 근무요건과 복리후생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넷째, 여러 법과 규정에 분산되어 있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정의, 자격, 배치 및 근무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법률에 통합 규정해야 합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 개선과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오늘날 생활체육은 단순한 여가활동과 체력증진이라는 전통적인 차원을 넘어 국민복지차원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활동은 건강 증진 및 질병예방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가적으로 의료비의 절감이라는 경제적인 효과도 가져오게 됩니다.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와 참여자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 시설, 조직, 프로그램의 개선·확충도 필요하지만, 생활체육지도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날 생활체육지도자는 증가하는 여가시간의 건설적 활용, 생활체육 참여 유도 및 체육 저변 확대, 청년 체육인 일자리 창출 등 체육을 통한 국민복지 향상을 위한 선구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체육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들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전문가로서의 역할에 걸맞는 대우를 해야 하는 지금, 이들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처우 보장을 호소하는 것은 약자에 대한 권익보호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이들을 온당하게 대우하는 것이 정의의 관념에도 부합합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 처해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뿐 아니라 사회·국가적으로도 필요한 일입니다.

생활체육에 기반한 스포츠강국으로서 체육의 질적 향상과 지도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는 체육환경을 조성하고, 더 나아가 스포츠복지를 통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는 길이며, 전문체육인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우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제 생활체육지도자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합리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체육회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열악한 고용환경이나 보수체계 등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는 일을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2017. 10.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일동